



제424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기획재정위원회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소득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〉

■ 김영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415호)

2025. 4.

기 획 재 정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최병권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소득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(안 제15조의2)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영진의원 등 15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11. 11.

다. 회 부 일 : 2024. 11. 1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재정법」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).

Ⅲ. 검토의견

1. 소득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(안 제15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○ 소득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 -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제출(예산서 작성·제출 및 결산서 작성은 「국가재정법」에 신설) - 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 제출(기금운용계획서 작성·제출 및 기금결산서 작성은 「국가재정법」에 신설)

개정안은 소득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417호)¹⁾의 의결을 전제로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.

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각종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재정정책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을 분석·평가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나,

소득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

1)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김영진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5417호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○ 소득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 - 이 법의 목적으로 정의로운 재정운용 규정 - 예산의 원칙에 소득계층별 영향 관련 사항 규정 -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작성·제출 - 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·제출 -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작성(제출은 「국가회계법」에 신설) - 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 작성(제출은 「국가회계법」에 신설)

구체적 실행방안을 면밀히 설계하고, 예산 및 기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·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 분석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개정안은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.

※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(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)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한다. 1. ~ 7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8. ~ 12. (생략)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 1. ~ 2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(생략) ③·④ (생략)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 서,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 가스감축인지 결산서,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 ①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 <u>7의3.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</u> 8. ~ 1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 <u>2의3. 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</u> 3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같은 항 제7호의</u> <u>3에 따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, 제</u> <u>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,</u> <u>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</u> <u>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</u> <u>2호의3에 따른 소득재분배인지 기금</u> <u>결산서</u> ----- -----.

문 의 처

02)6788-5153